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2168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216897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8. 11 선고 2020가단11798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

담당변호사 김재성, 이상혁, 최철호, 이상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경

변론종결 2022. 4. 19.

판결선고 2022. 6. 2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. 8. 11. 선고 2020가단11798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. 4. 24. 접수 제45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, 판사 박이규